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1월 25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85호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1호부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
12. 행정정보(개인정보)화에 관한 사항
13.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(회의)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2호 중 ‘후생복지’ 다음에 ‘(공동직장어린이집, 본사 구내식당 등)’을 삽입한다.

제13조제5호부터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‘군포산업진흥원 내 체육시설’을 ‘부곡체육시설(본사 사옥관리 포함)’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미래기획부)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(회의)에 관한 사항</p> <p>12. (신설)</p> <p>13. (신설)</p> <p>14. ~ 15. (생략)</p> <p>제13조(경영지원부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노무 및 <u>후생복지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 <p>3의2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</p> <p>6. 행정정보(개인정보)화에 관한 사항</p> <p>7. ~ 12. (생략)</p> <p>제14조(체육레저부)</p> <p>1. 국민체육센터, 시민체육광장, 복합생활스포츠타운, 소규모체육시설, 송죽다목적체육관, <u>군포산업진흥원 내 체육시설</u>, 초막골캠핑장시설(이하 “체육레저시설”)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.</p> <p>2. ~ 10. (생략)</p>	<p>제12조(미래기획부)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<u>행정정보(개인정보)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3.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(회의)에 관한 사항</p> <p>14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경영지원부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(<u>공동직장어린이집, 본사 구내식당 등</u>)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3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삭제></p> <p>6. <삭제></p> <p>7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체육레저부)</p> <p>1. ----- ----- , <u>부곡체육시설(본사 사옥관리 포함)</u>,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